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0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보조비율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2.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부담액의 40퍼센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액의 60퍼센트

비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